

계약분쟁법

(CONTRACT DISPUTES ACT)

계약분쟁법이 제정되기 전에 연방정부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가 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제소하기 전에 행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이러한 정부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간의 계약분쟁과 관련하여 제정된 1951년 Wunderlich Act는 계약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당해정부의 계약담당관의 사기행위가 없는 한, 그 계약담당관의 결정은 종국적이라고 하며, 계약분쟁에 관한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를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Wunderlich Act를 강화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78년 계약분쟁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며 최근 1996년에 개정되었다.

계약분쟁법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는 청구로 인하여 개시된다. 계약자는 제소하기 전에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계약자가 10만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청구가 선의로 행해졌고, 청구에 관한 입증자료는 그의 지식과 믿음의 범위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청구액은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계약자가 믿는 금액조정을 통하여 정확히 반영하였으며, 증명자는 계약자를 위하여 청구의 내용을 증명할 권한을 정당히 부여받았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계약분쟁에 관하여 제소하기 전에 계약담당관의 서면결정이 특정기간내(60일)에 있어야 하며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 계약자는 제소할 수 있다. 계약분쟁법으로 인하여 계약소청심사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그 위원회의 절차를 주재할 행정판사의 지위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계약자가 계약담당관의 결정문을 수령한 경우, 그는 계약소청심사위원회 또는 연방청구법원에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자가 그 결정의 내용에 불만족한 경우에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고할 수 있으며, 대법원에 그 결정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상고할 수도 있다.

계약분쟁법의 내용은 제1조 명칭, 제2조 정의, 제3조 법의 적용, 제4조 해상계약, 제5조 사기적 청구, 제6조 계약담당관의 결정, 제7조 계약자의 계약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항고권, 제8조 기관의 계약소청심사위원회, 제9조

소액청구, 제10조 위원회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 제11조 소환장, 증거개시, 증언녹취서제 12조 이자, 제13조 청구에 대한 지급, 제14조 가분성을 그 내용으로 한다.